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도 참고		
보도	2021. 9. 23.(목) 조간	배포	2021. 9. 17.(금)
담당부서	연금감독실	김용민 팀장(3145-5199), 곽윤정 조사역(3145-5195)	

제목 : [금융꿀팁 200선] ⑫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(금융꿀팁)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
- 이에 122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 저축 활용법”을 안내해 드림

- ◆ (사회초년생)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·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
 -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(퇴직연금)에 납입하여 투자하고
 -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·단기 필요자금은 ISA(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)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
- ◆ (은퇴준비자) 연금저축·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(5.5~3.3%*)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·금액을 조정할 필요
 - 이하 세율에는 지방세를 포함
 -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,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,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함
 - ‘연금저축’과 ‘퇴직금을 받은 IRP’를 이체·통합하는 것은 자금 인출 시기·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금융꿀팁 200선 – ⑯

제 목	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
	<p>① (사회초년생 사례) 최근 입사한 A씨는 사회초년생(총급여 5천만원 이하)으로 결혼 및 주택 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임 한편,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음</p> <p>(꿀팁) 연금저축·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반면, 만기(3년 이상)가 짧은 ISA는 수익(200만원 限)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,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(400만원 限)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음</p> <p>☞ ①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·IRP에, ② 중·단기 자금(결혼비용 등)은 ISA에 각각 납입하고, 필요한 경우 ISA 만기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</p>
사례	<p>② (은퇴준비자 사례) 최근 퇴직한 B씨(만55세 이상)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,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,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‘퇴직금을 받은 IRP’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음</p> <p>(꿀팁)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 (5.5~3.3%)가 아닌,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(16.5%)가 부과될 수 있고,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(6.6~44%)가 적용되며,</p> <p>‘연금저축’과 ‘퇴직소득을 수령한 IRP’를 이체·통합 시, 먼저 퇴직 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음</p> <p>☞ ①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, 수령액은 연 1,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②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 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리</p>

꿀 팁

①연금저축·IRP는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·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아니함 (사회초년생 사례)

- 연금저축은 ①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*를, ②연금형태**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(5.5~3.3%)를 적용***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할 수 있음

* 연간 300만원¹⁾ 또는 4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3.2% 또는 16.5%²⁾까지 세액 공제

- 1) 종합소득 1억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.2억원) 초과시
- 2) 종합소득 4천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,500만원) 이하시

**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기 위한 연금수령 요건

- 1) 가입후 5년 경과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수령을 개시
- 2)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(☞연금수령한도는 <참고3> 참조)

***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: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

세액공제		연금소득세(5.5~3.3% 적용)
납입기간(5년 이상)		연금수령기간
연금저축 가입	연금수령개시 (만55세 이후)	연금수령 종료

- 반면,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“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+ 연금저축의 운용수익”에 대하여 16.5%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됨

기타소득세(16.5% 적용)		
중도해지 등 연금외 수령하는 경우		
연금저축 가입	연금수령개시 (만55세 이후)	연금수령 종료

- 따라서, 당장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①노후(55세 이후)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되, ②그 밖의 중·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

② ISA 만기(3년 이상)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(납입)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(사회초년생 사례)

-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(예적금·펀드·주식 등)에 투자하여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(9.9%)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서, 중·단기 여유자금 등을 운용하기에 적합함 특히, ISA 서민형(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, 종합소득 3.5천만원 이하)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(200만원↑)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음

ISA의 주요내용

구분	주요 내용	
가입 대상	· 19세 이상 *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	
편입 자산	· 예·적금, 펀드, 상장주식, 파생결합증권등	
계약기간 및 납입한도	· (최소계약기간) 3년 * 연장 가능 · (납입한도) 연 2천만원 * 총 1억원 한도	
세제 혜택	· 계좌 내 이자·배당소득·주식 양도차손 손익통산 ·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(200만원 限) * 서민형 등 400만원 限 · 한도초과분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(9.9%)	

- 또한, ISA 만기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전부(또는 일부)를 연금저축·IRP로 전환*(납입)시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%(300만원 한도)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
 - * 만기 ISA를 연금저축·IRP로 납입시 연간 총납입한도 및 세액공제한도 (연간 총납입한도) 연 1,800만원 + ISA 전환금액 (세액공제한도)연금저축·IRP 합산 700만원 + ISA 전환액의 10%(300만원 限)

만기 ISA의 연금저축·IRP 전환(납입)시 세액공제(예시)

구분	연간 납입액			세액공제
	연금저축	IRP	ISA 납입액	
사례	400만원	300만원	5,000만원	1,000만원*

* 연금저축 400만원+IRP 300만원+ISA 3백만원(납입금액×10%, 300만원 限)

③ 연금저축과 IRP(본인추가납입액)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,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음 (은퇴준비자 사례)

-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 시 연금수령기간을 10년* 이상으로, 연금액은 연 1,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(16.5%)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(5.5~3.3%)가 부과됨

* '13.3월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·IRP은 10년간 세법상 한도 이내에서 수령 해야 연금소득세 적용(단, **'13.3월 이전 계약은 5년간 분할수령 가능**)

연금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 시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,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

<참고 3> 연금수령 기간·연령에 따른 세금부과(예시)

- 또한, 연금저축과 IRP(본인추가납입액)에서 받는 연금수령액이 연간 1,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(6.6~44%,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)가 부과되므로

연간 총 1,200만원*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

* 다만, 1,200만원 한도산정 시 공적연금(국민연금 등),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 연금, 舊개인연금은 제외되며, 연금저축, IRP(본인추가납입액) 중 소득·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,200만원 한도에서 제외됨

연간수령액 1,200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연금종류

연금 종류		한도적용	비 고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		X	
퇴직 연금	퇴직금	X	
	본인 추가납입액	○	소득·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
개인 연금	연금저축*	○	
	舊개인연금**	X	
	연금보험	X	

* '01.1월 이후 판매된 소득·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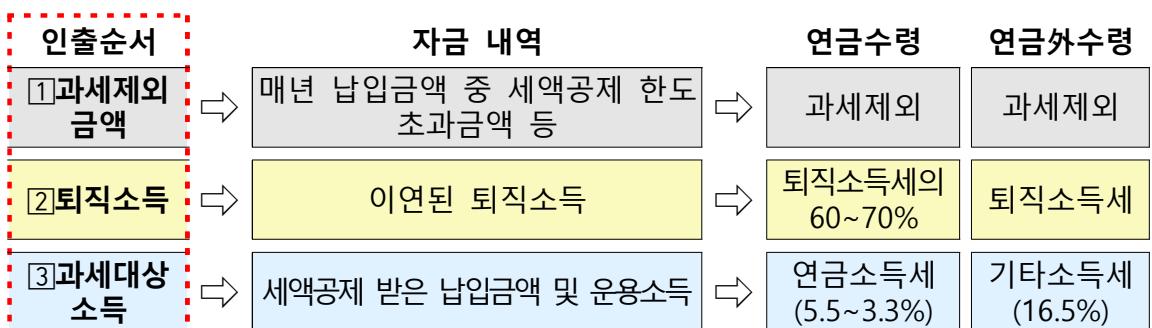
** '94.6. ~ '00.12. 기간 중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

**④ 연금저축·IRP(본인추가납입액)와 ↔ IRP(퇴직소득 수령)간에 자금을
이체하여 계좌를 통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 (은퇴준비자 사례)**

- 연금저축 ↔ IRP간 자금이체는 소득세법상 ①55세 이후에 ②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*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며

* “퇴직소득이 입금된 IRP”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을 적용받지 않음

연금저축·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시, ①과세제외금액 → ②퇴직소득 → ③(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+ 운용소득) 順으로 인출됨



- 계좌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연금저축·IRP(본인추가납입액)와 ↔ 퇴직 소득을 수령한 IRP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려 할 수 있으나, 이러한 이체·통합은 다음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
-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·IRP(본인납입)의 자금*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·금액의 선택권이 제약**될 수 있음
 - * (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+ 운용소득)
 - ** 앞선 사례와 같이, (55세 ~ 국민연금 수령) 기간에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 하려는 경우, ‘연금저축’과 ‘퇴직소득’이 있는 IRP를 합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
- 또한,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, 연금저축·IRP(본인추가납입액) 부분만을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*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음
 - * 세액공제받은 자기부담금·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, 퇴직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(퇴직소득세의 70% 수준) 대신 퇴직소득세 부과

위 자료는 소비자의 연금세제 이해를 위해 작성된 자료임.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1**공·사적 연금 적립금 현황**

※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,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제외

(단위 : 조원, %)

구분	'18년 말	'19년 말	'20년 말	'21.6월 말	
				증가율	구성비
개인연금(A+B)	337.7	351.3	365.8	371.6	1.6 24.3
세제적격(A) ¹⁾	135.2	143.4	152.5	156.8	2.8 10.2
보 험	100.5	105.6	109.7	111.1	1.2 7.3
신 탁	17.2	17.4	17.5	17.2	△2.0 1.1
편 드	12.1	14.5	18.9	22.0	16.6 1.4
기 타 ²⁾	5.4	5.9	6.4	6.5	2.0 0.4
세제비적격(B) ³⁾	202.5	207.8	213.3	214.8	0.7 14.1
보 험	202.4	207.8	213.3	214.8	0.7 14.1
퇴직연금(C)	190.0	221.2	255.5	263.7	3.2 17.3
사적연금(A+B+C)	527.7	572.5	621.3	635.3	2.3 41.6
국민연금(D)	638.8	736.7	833.7	892.3 ⁴⁾	7.0 58.4
총 계(A+B+C+D)	1,166.5	1,309.2	1,455.0	1,527.6	5.0 100.0

주 : 1) 은행, 증권,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

2) 신협, 수협,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공제보험 등

3) 보험회사의 일반 연금보험, 변액연금 4) '21년 5월 적립금 기준

참고2**연금저축 가입자 관련 통계**

□ 20~30대 연금저축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24.0% 수준

연금저축 가입자의 연령별 분포

(단위 : 천명, %)

구분	~ 20세	20~29세	30~39세	40~49세	50~59세	60~64세	65세~	합계
가입자수	29	367	1,023	1,623	1,808	598	453	5,901
비중	0.5	6.2	17.3	27.5	30.6	10.1	7.7	100

* 은행연합회 소득·세액공제한도 통계 기준

참고3

연금수령 기간 및 연령에 따른 과세(예시)

< 연금수령 기간에 따른 과세 > ↗ 10년이상 분할수령이 유리할 수 있음

- 연금저축 총 적립금액 : 4,000만원
- 4년간 분할수령(매년 1,000만원)하는 경우 총 511만원 과세
 - 10년간 분할수령(매년 400만원)하는 경우 총 220만원 과세(291만원↓)

수령 기간	총 수령액(A)	세금(B)	실수령액 (A-B)	세금 산출내역
4년	4,000만원* * 年 1000×4년	511만원	3,489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연금소득세 : 74만원 = 연금수령한도(480~171)* × 5.5% ▶ 기타소득세 : 437만원 = (1,000-연금수령한도) × 16.5%
10년	4,000만원* * 年 400×10년	220만원	3,780만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연금소득세 : 220만원 = 400 × 5.5% × 10년

* 4년간 연금수령한도 : 1차년 480만원, 2차년 400만원, 3차년 300만원, 4차년 171만원

※ 연간 연금수령한도 계산식

$$\text{연간 연금수령한도} = \frac{\text{연금계좌 평가액}}{11-\text{연금수령연차}} \times 1.2$$

< 연금수령 연령에 따른 과세 > ↗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 부과

- 적립금 6,000만원, 20년간 매년 300만원 연금수령
- 연금개시 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.5만원
 - 연금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264만원(49.5만원↓*)
- * 이는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임
(연령별 연금소득세율 55~69세 5.5%, 70~79세 4.4%, 80세 이상 3.3%)

